

폭행·교통사고·산재 환자?

▶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고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상원인을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면
병·의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조회대상

교통사고, 폭행사고, 업무상 또는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진료 받을 경우
본인의 고의행위로 진료 받을 경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따른 부상으로 진료 받을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등

“급여제한여부조회”를 통해

폭행·교통사고·산재 환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항상 환자에게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이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